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6년 7월 15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삼성KODEX 미국S&P5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21. 3.15

3. 정정 사유: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

4. 정정요구 · 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39조(이익 분배)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_____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. 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 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 라 계산되는 이익(다만 2025년 7월 1일 이후 발 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) 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3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 자재산의 매매이익 4. (추 가)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_____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. 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 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 라 계산되는 이익(다만,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제 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으로서 202 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.) 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3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 자재산의 매매이익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 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 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 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
제39조의2 (투 자신탁분 배금의 지급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 와는 별도로 (최초설정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당시 분배가 유보되었던 배당이익을 포함하여) 투자 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 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	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 와는 별도로 (최초설정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당시 분배가 유보되었던 배당이익을 포함하여) 투 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 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(추 가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	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,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
부칙	(추 가)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(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)